

'24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계획

1 사업 개요

-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주당 최대 10억(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3천만원)
 -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신청자격 제한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5.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모집기간: 공고일 ~ '24. 1. 26.(금) 18:00
 -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신청접수
- 교부처: 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kead.or.kr)
- 접수처: 사업주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작성 예시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고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전문기관 평가시 추가 필요서류 안내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장애인근로자명부(중증·여성·고령),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및 전월 급여이체내역서
- 재무제표(최근 결산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예시: 지적재산권, 품질인증 서류 등)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 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지원대상자 의무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 하여야 함 (미이행시 월단위로 유지 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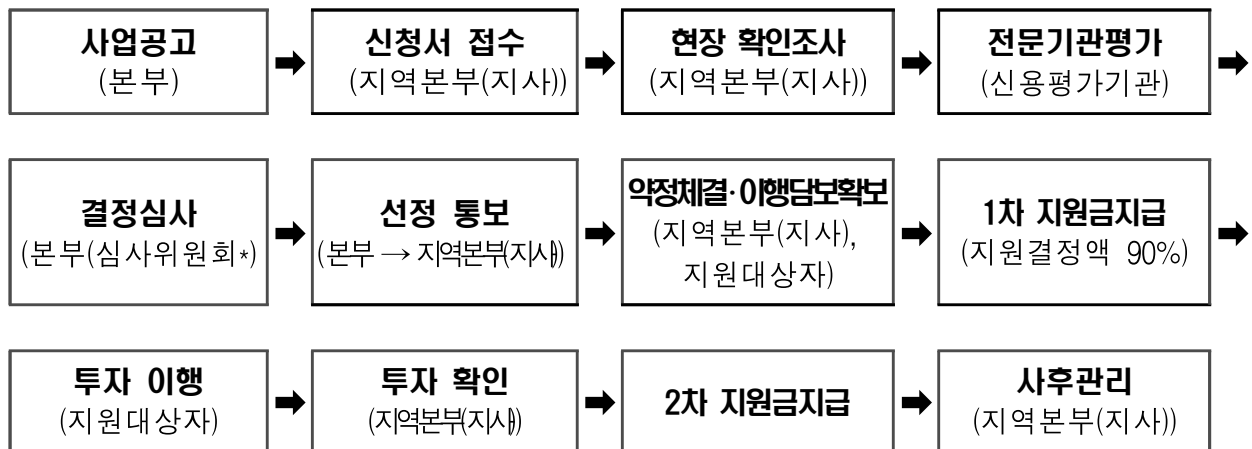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 예산 및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업체수를 선정하며,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 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도 내 투자완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평가 의뢰 시 현장방문을 생략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선정 시 평가가점 및 우대사항

- 평가 가점(평가점수의 5% 가산)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창업자금 지원 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문화예술분야 사업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이하 “BF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 또는 BF인증 계획을 투자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업주*
 - * BF인증 계획을 제출하여 가점을 받아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본인증 획득하지 못할 시 시정요구를 거쳐 지원금 회수될 수 있음
 - ** 가점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우대 사항(항목별 배점한도에 따름)
 - 중증, 여성, 고령장애인 고용실적, 지역사회·기업의 협조·지원 여부, 핵심선도사업, 사업경영 전력 등
- ※ 세부 적용기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 등에 따름
- * 공단 누리집 참조: www.kead.or.kr(정보공개 → 법령자료실 → 내부규정)

2

신청 문의

신청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담당자: 인천지사 기업지원부 박창열 차장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1층
- 전화: 032-242-1037
- 팩스: 050-3470-0141
- 이메일: grace@kead.or.kr